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19 - 21호

강원도립대학교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제도 용역입찰 공고(협상에 의한 계약)

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「강원도립대학교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제도 용역」을 위한 입찰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0. 2.

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용 역 명 : 강원도립대학교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

및 학사제도 용역 입찰

나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. 12. 31.까지

다. 사업예산 : 금4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※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,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.

라. 입찰방식 : 일반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마. 과업범위 및 내용 : 제안요청서 참조

2.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가. 입찰방법 : 일반입찰

나. 계약방법(낙찰자 선정방식) : 협상에 의한 계약

※ 근거규정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

3. 입찰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나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·연구용역업(업종코드:1169)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, 비영리법인, 업체
 - 1)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(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)
 - 2)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
 - 3)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
 - 4)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·허가된 학술연구기관, 비영리법인(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·연구 분야 사업 포함)

- 5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(유효 기간 내)
 - ※ 비영리법인은 '중・소기업・소상공인 확인서' 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
- 다. 위 항목(가,나,다)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,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.
 - ※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, 휴·폐업, 업무정지,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,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

4. 공모 및 제안일정

 구 분	추 진 일 정	내 용
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	2019. 10. 2.(수) ~ 10. 14.(월)	•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)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재
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	2019. 10. 14.(월)	 접수처: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실(1F)※우편접수 불가 시 간: 10:00~17:00 * 중식시간 제외 (12:00~13:00)
협상적격자 선정	2019. 10. 16.(수)	• 기술평가위원회 심사
계약체결	2019. 10월 중	• 순위에 따라 심사

^{*}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

가. 일 시 : 2019. 10. 14.(월) 10:00~17:00

- 나. 장 소 :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실(1F)
- 다. 방 법 : 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및 가격제안산출내역서(서식7·8호 밀봉)를 동시에 제출
 - ※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,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
- 라. 제 출 자 :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
- 마. 입찰 등록 제출서류 : [제안요청서 상세참조]
 - 1)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
 - 2) 가격제안서
 - 3)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
 - 4)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등

바. 유의사항

- 1)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및 도장 지참
- 2)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,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3)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
- 4)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

6.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

- 가.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
- 나.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량평가 수행실적 금액이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수행실적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.

7. 협상적격자 통지 및 계약체결

- 가.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
- 나.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,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
- 다.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
- 라.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
- 마.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.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.

8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

- 가.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(응모)신청서로 갈음한다.
- 나.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.

9. 청렴계약 이행준수

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단,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

간주함

나.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,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함

10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제안서 작성요령,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『제안요청서』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나.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,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.
- 다.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한다.
- 라.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,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.
- 마.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.
- 바.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.
- 사.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.
- 아.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

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,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- 자.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,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.
- 차. 기타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(☎033-660-8081)로 문의
 - ※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함.